

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
-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및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부합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비추어볼 때,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2000. 7. 26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었는데도 우리군에서는 조례 제정이 늦은 사유는?
- 답 : 우리군에서는 1999. 7. 14 고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, 2003. 10. 23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으로 경남도로부터 시·군에서도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토록 권고 지시를 받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- 문 : 조례제정 동기 및 제정 이후 운영계획이 달라진 점은?
- 답 : 도에서 조례제정권고 공문지시와 군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문 : 조례안 제6조제1항의 관리부서의 장은 누구를 뜻하는가?
- 답 : 행정과장을 말합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8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